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5-1-15

규정번호 5-1-15
제정일자 2010.5.10
최근개정 2026.2.6
개정차수 46차 개정
관리부서 학사지원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업 및 강의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목 편성) ① 교과목 편성은 수업시간 단위를 고려하여 교시별로 골고루 배정하며, 교양 및 통합전공교과목 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8., 2017.06.20., 2018.02.26)

② 매 학기 교과목 편성 과목 수는 재학생수를 고려하여 강좌수를 정하며, 학과 또는 전공당 15~18학점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성된 교과목은 매 학기 소정기간 중에 교양교과목은 교육과정혁신팀에서, 전공교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개설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14.12.08., 2015.12.03., 2017.02.27., 2017.07.14., 2018.08.27., 2021.08.18., 2022.06.08.,2024.7.24.)

④ 통합전공 교과목은 주관부서(산학AI융합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창업팀, AI융합진로지원센터) 및 학과에서 개설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신설 2017.06.20., 개정 2018.02.26., 2019.06.17., 2022.06.08.,2022.12.12.,2024.7.24., 2026.2.6.)

제3조(교과목 신설 및 변경) ① 교과목 신설, 변경은 해당 학과 및 부서에 편성된 교육운영계획서에 따른다.(개정 2017.07.14.,2024.01.24)

② 교육과정의 일부 변경(교과목의 신설, 폐지, 변경)의 경우 학년도 단위로 부분 개편이 가능하며, 부분개편 시 교육과정 기본구조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운영계획서 작성 지침 내 교육과정 변경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7.07.14.,2024.01.24)

③ <삭제(2024.1.24.)>

제4조(수업시간 운영) ① 수업시간의 분강 단위는 75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3.1.)

② 전임교원은 연강을 불허한다. 단 비전임 교원의 담당 교과목 및 실험·실습, 체육실기 및 연기교과목은 연강할 수 있다.(개정 2024.7.24.)

③ 수업시간은 지정된 시간대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업시간대 이외의 수업을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강의실 배정) ① 강의실은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에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험실·실습실 등은 해당 학과에서 관리한다.(개정 2017.07.14.)

② 강의실은 학과별로 개설 강좌수를 고려하여 배정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라 일반강의실, 종합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을 배정한다.(개정 2017.07.14.)

제6조(분반 및 폐강) ① 이론 교과목의 수강생은 40명 이하로, 실험·실습·체육·외국어 회화 및

연기실기 교과목의 수강생은 30명 이하 인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특성 및 수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5.16., 2020.05.25.,2023.01.20.,2025.8.11)

②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이거나, 계절학기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교과목 중 졸업 직전 학기의 강좌, 학과 요청에 따른 개설유지가 필요한 교과목 등 강좌 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유지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08.27., 2020.05.25.,2023.01.20.,2025.8.11)

제7조(휴강 및 보강) 교수 및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계획서」를 사전에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에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3., 2017.02.27., 2017.04.25., 2017.07.14., 2018.08.27.)

제8조(전임교원의 강의배정)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3일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학사과정 강의에 우선 배정한다.(개정 2023.09.25.,2025.8.11., 2026.2.6.)

제9조(속강제한) 3시간 이상의 강의는 분리하여 수업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효과와 교과목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간계정) ① 책임시간과 강사료의 산정기준은 시간계정으로 한다.

② 수강인원에 따른 시간계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격강좌 중 전공교과목에 한정하여 <별표2>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6.3.1.,2023.08.07., 2024.01.24.,2024.7.24)

<별표1>

수강인원	시간계정
60명 미만	수업시간
60명 이상 100명 미만	수업시간 150%
100명 이상 150명 미만	수업시간 200%
150명 이상	수업시간 250%

(개정 2016.3.1.,2020.05.25.)

<별표2>

수강인원	시간계정
40명 이하	수업시간
41명 이상 80명 이하	수업시간 150%
81명 이상 120명 이하	수업시간 200%
121명 이상	수업시간 250%

(신설 2024.01.24.)

③ 학점과 강의시간이 다른 교과목의 시간계정은 강의시간 수로 한다.

④ (삭제 2016.3.1.)

⑤ 공동강좌 운영에 따른 시간계정은 학사지원팀에 사전 제출한 교원별 총 주차 중 수업시간 배정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3.1., 2026.2.6.)

⑥ 원격강좌의 경우 담당 교수자가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콘텐츠를 수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간계정은 50%만 인정한다(신설 2023.01.20.)

⑦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참여 교원에 대하여는 강의시간에 따라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신설 2024.1.24.)

제11조(책임강의시간 보충) ① 담당강의 시간이 책임강의시간에 미달될 때에는 그 다음 2개 학기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달한 책임강의시간의 보충을 위해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한 시간은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9.10.21.)

②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이 3시간 이상 미달될 경우, 이를 보충할 때까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개정 2019.10.21.)

1. 승진, 승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년 및 교환교수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5.8.11.)

③ 전임교원이 그 다음 2개 학기 내에 책임강의시간을 보충하지 못할 경우 미달된 책임시간에 강사 강의료를 적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 예정인 교원은 해당학기 급여에서 공제한다.(개정 2016.04.26., 2019.07.30., 2019.10.21)

제12조(전임교원 책임시수)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9시간으로 한다. 단, 정년 전 마지막 2개 학기에 대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6시간, 강의전임교원은 12시간으로 할 수 있고, 초과 강의료는 감면 전 책임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2.5., 2018.08.27., 2020.03.30.,2020.07.27.,2024.7.24.,2025.1.23)

② 행정보직교수의 주당 책임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2.25.,2025.8.11)

③ 별도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게는 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 책임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3.)

제13조(강의시간 배정) ① 일반 전임교원은 주당 9시간 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8.27., 2018.12.10., 2019.02.25.,2020.07.27., 2022.08.08.,2025.1.23)

② 겸임교원은 주당 6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초빙교원은 주당 6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명예교수는 주당 3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객원교원은 주당 6시간 이하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2.6.)

⑥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주당 6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23.)

⑦ 강의전임교원은 주당 15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⑧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08.31.)

⑨ 외국인 교·강사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⑩ 특임교수는 주당 6시간 이하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8.11.)

제14조(실험실습시간수) ① (개정 2016. 9. 2, 삭제 2025.8.11)

② <삭제(2025.8.11.)>

제15조(강의시간표 변경)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

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은 수강신청 개시 전 소정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계획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9학년도 교육운영계획서 및 강의시간표 작성지침에 대한 경과조치)

1. 졸업학점 이수 기준은 복학 및 재입학년도의 동일 학년의 이수 기준으로 이수해야 한다.
2. 1개 교과목이 2개 이상으로 교과목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전의 1개 교과목 이수로써 분리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교과과정 변경으로 이론 교과목과 실습 교과목이 단일 교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또는 2개의 교과목이 단일 교과목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두 교과목 중 어느 한 교과목의 이수로써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 교과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대체교과목을 지정해야 한다.
5. 동일 교과목의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과목 이수 학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후의 이수구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위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1조 제3항 및 제13조 제7항은 2014년 3월 1일 신규임용 및 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3.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①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교원 책임시수 및 강의시간 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 및 제13조의 책임시수 및 강의시간 배정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25조의2 제2항 개정 이후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별표 1>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장”을 “교육혁신지원센터장”으로,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을 “진로취업지원센터장”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별표1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별표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별표 1>의 “대학혁신단장”을 “대학혁신본부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11> (생략)

<12>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창업센터"로, [별표1]의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취·창업센터장"으로 변경한다.

[별표1]의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을 "교수학습센터장"으로 변경한다.

제2조제3항의 "기초창의교양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한다.

<13> - <25>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1항, 별표1)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항)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부 칙[별표1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7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별표1)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6항)

부 칙(직제규정) <2025.3.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9> (생략)

<10>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5-1-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평생교육원장”을 “평생교육본부장”으로 한다.

[별표1]의 “평생교육부원장”을 “평생교육부본부장”으로 한다.

<11> - <17>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0항, 제14조제1항·제2항, 별표1)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항, 제8조, 제10조제5항, 제13조제5항)

[별표 1](개정 2015.12.03., 2017.02.27., 2018.12.10., 2019.02.25., 2020.08.31., 2021.01.21.,2022.02.21.,2022.06.08., 2022.08.08.,2023.03.30.,2024.7.24.,2025.3.31)

보직교수 주당 강의 책임시간 <삭제 2025.8.11.>